


문 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과 장 윤병수 사무관 김의태	042-481-5879 042-481-5583
 <p>2021년 3월 31일(수)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p>			

특허심판, 디지털 전환시대의 권리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 특허심판원, 우선심판대상 확대 등 행정규칙 개정 -

- 특허심판원(원장 이재우)은 3월 31일(수) 일괄심사*를 신청한 출원이 거절결정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심판을 우선심판 대상으로 보아 권리화 여부를 조기에 심판에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정 사항이 반영된 행정규칙을 시행한다.
 - * 서비스를 포함하는 하나의 제품군에 관련된 복수의 특허 등의 출원에 대하여 출원인이 원하는 시기에 맞추어 일괄적으로 심사하는 제도
- 이번 개정에는 우선심판 대상으로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출원(신특허분류(Z)를 부여 받은 출원)의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새로 포함되었으며,
- 심판 관련 법제도 개선,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으로 새로운 기준 정립이 필요한 사항 등 주요 현안을 심의·의결하는 수석심판장 전원회의의 근거도 마련되었다.
- 이밖에도 특허법원에서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취소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할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제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자 심리를 종결하기 전에 종결 예정시기를 미리 통지하도록 하는 등 고객의 편의를 위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 이번 개정은 디지털 혁신·융복합 등 4차 산업혁명시대의 첨단기술에 대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 이재우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심판원이 디지털 전환시대에서 핵심 기술 보호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심판과 정확하고 일관된 판단 기준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신속·정확한 특허심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특허심판원 소관 행정규칙 주요 개정사항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김의태 사무관 (☎ 042-481-558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우선심판 대상 확대**

- 지식재산 디지털 혁신전략에 따른 신기술분야(AI, 데이터 등)로 일괄심사된 출원의 거절결정불복 심판을 우선 처리할 필요
 - (확대) AI 등 디지털 신기술분야 일괄심사된 출원의 거절결정불복 심판사건에 대해 우선심판 처리
 - * 출원인이 지재권 패키지 확보를 위해 일괄심사 신청사건 중 일부는 등록, 일부는 거절결정되는 경우, 거절결정의 타당성 여부를 심판에서 재검토
-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출원(신평류분류: Z)의 심판사건을 우선하여 처리할 필요
 - (확대) 해당 권리의 무효·권리범위확인심판 중 당사자가 신청한 사건은 우선심판으로 처리

□ **수석심판장 전원회의 근거 마련**

- 심판 법제도 개선, 법리통일 등의 심의 및 의결을 위해 심판원장 및 모든 수석심판장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운영할 필요
 - * 공정거래위원회, 조세심판원은 중요사건 등에 대하여 전원회의,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제도를 운영
- 특허심판원의 최상위 심의·의결 회의체로서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속기록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는 등 체계화

◎ 수석심판장 전원회의의 심의·의결 사항

1. 심판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사회적인 관심도가 높은 주제로서 새로운 심판기준 정립이 필요한 사항
3. 심판부간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일치된 심판 기준이 필요한 사항
4. 판례 및 법원의 재판기준 수용 여부에 관한 사항 등

□ 취판사건 당사자의 의견제출기회 보장

○ 심리기간이 짧은 취판사건*은 당사자의 의견제출기회 보장을 위해 심리종결 전 심리종결예정시기를 통지**할 필요

* 특허법원에서 심결이 취소되어 특허심판원에서 다시 심판하는 사건

** 현재 우선심판 사건의 경우 심리종결예정시기 통지를 생략할 수 있음

- (변경) 우선심판의 이유가 심결취소소송에서 취소된 사건인 경우 심리종결 예정시기를 통지하도록 변경